



중앙방역대책본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

1. 관련

- 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2020.10.4.)
- 나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및 제83조

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이하, 감염병예방법)」 개정(2020.8.12.)에 따라 행정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,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20.10.13. 부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.

3. 질병관리청(중앙방역대책본부)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 기준 및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, 관계부처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'20.10.4.)보고

- **적용기간:** 감염병 위기 "경계" 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
 ※ 단, 계도기간 1개월(~2020.11.12.) 부여
- **법적근거:**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~4호, 제83조
- **과태료 부과 대상 등:** 상세내용 <붙임> 참조

붙임.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. 끝.

